

#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52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및 적용범위 (안 제2조 및 제6조)
- 나.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4조)
- 다. 육성사업 추진 (안 제5조)
- 라. 시설운영 및 협력체계 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5. 10. 22. ~ 2025. 11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평창군 입법예고 제2025-1533호, 경제과-54627(2025. 10. 21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6354(2025. 10. 2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6354(2025. 10. 21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8215(2025. 10. 20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8278(2025. 11. 19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29(2026. 1. 5.)호]

##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,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예비기업”이란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해당하나 아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, 필요한 제도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
2.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4.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5. 시설·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육성사업의 추진)**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
2.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
3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
4. 판로 확대 및 인증·실증 인프라 지원
5.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업
6.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
7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지원대상)** 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.

**제7조(시설운영 지원)**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, 기업, 대학,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, 펀드조성,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른다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본 의안은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조례로서,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나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“군수는 ~ 지원할 수 있다” 등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,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해순
연락처	(033) 330 - 2540